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(영업정지)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 85 조의 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6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 년 9 월 1 일

경 기 도 지 사

상 호 (대표자)	소 재 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 (기간)	처분사유	처분근거
태영건설 주식회사 (정임정)	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036	건축공사업 (10-1977)	영업정지 4개월 (‘26. 10. 1.~ ‘27. 1. 31.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(기술능력, 사무실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 83 조제 3 호